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 91호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정신이상자에 대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제한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코자 함.

2. 주요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정신이상자의 사용제한을 해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4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취자, 전염성질환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을 때에는</u> 사용허가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u>기타</u>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다음 <u>각호</u> 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및 퇴 장을 명할 수 있다. 1. <u>정신이상자, 만취자, 전염성 질환자</u> 2. (생 략)	제8조(사용제한)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 ② ----- <u>각 호</u> ----- ----- -----. 1. <u>만취자, 전염성질환자</u> 2.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제8조(차별금지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장애와 장애인) ○ 제4조(차별행위) ○ 제6조(차별금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차별 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정신이상자의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산업위원회 김 영 분 의원